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서울중앙지방검찰청
전문공보관 박승환
전화 02-530-4780 / 팩스 02-536-5410

보도자료
2023. 3. 15.(수)

제 목 A제약회사 비자금 횡령 등 기업비리 사건 수사결과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
-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(부장검사 김형석)는, 상장회사인 A제약회사 사주일가의 비자금 횡령 사건을 수사한 결과,
 - A제약회사 창업주의 아들인 **사장**이 회사 **전무**와 공모하여, 사주일가의 **지분 승계**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납품업체와 과다계상·가공거래 후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**총 91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한 사실**을 규명하고,
 - 비자금을 A회사 주식취득 등에 사용하고 A회사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**A회사 사장**, 비자금 조성을 담당한 **A회사 전무**, 비자금 세탁에 관여한 **대부업자 등 3명을 기소(1명 구속, 2명 불구속)**하고,
 - 또한 위와 같은 비자금 조성 사실을 제보하겠다고 A회사 및 A회사 전무를 협박하여 약 51억 원을 갈취한 비자금 조성 **납품업체 이사 및 세무사 등 2명을 구속 기소**함
- 이 사건은 당초 경찰에서 A회사 사장의 57억 원 비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취지로 불송치되었으나, 검찰에서 송치요구 후 직접 보완 수사하여 경찰이 불송치한 57억 원 및 추가 비자금 34억 원의 조성·사용사실을 밝혀내 기소하여 사주일가의 횡령 범행을 엄단하였음

1

피고인 및 죄명

	피고인(나이)	지위·역할	죄명	처분
1	ㄱ○○ (51세)	A회사 사장	특경법위반(횡령) 등	불구속기소
2	ㄴ○○ (70세)	A회사 전무	특경법위반(횡령) 등	구속기소
3	ㄷ○○ (66세)	C회사 대표	대부업법위반 등	불구속기소
4	ㄹ○○ (51세)	B회사(A사 납품업체) 이사	특경법위반(공갈)	구속기소
5	ㅁ○○ (59세)	세무사	특경법위반(공갈)	구속기소
6	A회사	제약회사(상장회사)	외부감사법위반	불구속기소
7	C회사	대부업체(ㄷ○○ 운영)	대부업법위반	불구속기소

2

공소사실 요지

① 특경법위반(횡령) 등

- (ㄱ○○, ㄴ○○) '08. 4.~'17. 9. A회사의 창업주이자 전 회장인 甲('16. 2. 사망)과 공모하여, 원재료 납품업체인 B사와 과다계상 또는 가공거래 후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약 91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A회사의 주식 취득, 생활비 등 사적용도로 임의사용 등 **[특경법위반(횡령) 등]**

※ 별첨 범행구조도

- (ㄱ○○, ㄴ○○, A회사) '16. 1.~'18. 3. 비자금 조성 관련 A회사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·공시 **[외부감사법위반]**
- (ㄷ○○, C회사) '10. 5.~'21. 9. 무등록 대부업 영위 **[대부업법위반]** / (ㄷ○○) '11. 4.~'17. 9. A회사 비자금 조성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ㄴ○○이 가져온 어음을 현금 등으로 환전·교부 **[특경법위반(횡령)방조]**

② 특경법위반(공갈)

- (ㄹ○○, ㅁ○○) '19. 10.~'22. 9. A회사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ㄴ○○으로부터 자기앞수표 5억 원, 피해자 A회사로부터 현금 2억 5,000만 원 및 물품공급계약 체결 후 납품대금 명목으로 43억 2,400만 원 등 합계 50억 7,400만 원 갈취 **[특경법위반(공갈)]**

3

주요 수사 경과

- '22. 5. 서울경찰청, 일부 송치 및 일부 불송치
※ A회사 전무 ㄴ〇〇의 57억 비자금 횡령, 무등록 대부업자 ㄷ〇〇의 대부업법위반 등 송치 / A회사 사장 ㄱ〇〇의 비자금 횡령, 납품업체 이사 ㄹ〇〇의 공갈 불송치
- '22. 7.~9. 검찰, 불송치 부분 재수사요청 → 경찰, 재수사결과 통보 (불송치의견 유지) → 검찰, 송치요구 → 경찰, 사건 송치
- '22. 9. 검찰, 계좌추적 및 A회사 본사 및 공장 등 압수수색
- '22. 10. 검찰, 공갈 혐의로 하청업체 직원 ㄴ〇〇, 공범인 세무사 ㄹ〇〇 각 구속, 기소
- '22. 11.~12. 검찰, 비자금 조성을 주도한 A회사 전무 ㄴ〇〇 구속, 기소
- '23. 1. 18./27. 검찰, A회사 사장 ㄱ〇〇 구속영장 청구 및 기각
- '23. 2.~3. 추가 비자금 34억 원 조성 확인 등 보완수사
- '23. 3. 15. A회사 사장 ㄱ〇〇, 대부업자 ㄷ〇〇 각 불구속 기소

4

수사의 의의

□ 납품업체와의 가공거래를 통한 상장기업의 비자금 조성·횡령 범행 엄단

- 본건은 상장회사인 A회사의 십수년에 걸친 비자금 조성 과정에 관여하게 된 납품업체 사장이 가공거래 등에 의해 누적적으로 부과된 거액의 세금부담 등으로 고통을 겪다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면서 수사가 개시된 사건임
- 검찰은 A회사 사주일가가 임직원을 동원하여 장기간에 걸쳐 납품업체와의 가공거래 등의 방법을 통해 반복적·조직적으로 91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비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한 사안의 전모를 밝혀냄
 - A회사는 B회사로부터 의약품 원재료를 공급받음에 있어 단가를 부풀린 과다계상거래 또는 납품사실 없는 가공거래를 한 후 과다계상 및 가공거래분 거래대금을 납품업체에 어음으로 지급 후 되돌려받아 A회사 출신 운영 대부업체 C회사에서 현금과 수표로 할인받는 방법으로 비자금 조성

- 조성된 비자금은 차명계좌를 통한 사주일가의 A회사 주식 취득, A회사 사장 100의 부인이 다른 회사로부터 수령한 허위 급여의 보전, 그밖에 사주일가의 개인생활비 등 오로지 사주일가를 위해 사용됨
- 이와 같이 A회사 사주일가가 장기간에 걸쳐 회사 자금을 개인 사금고 안의 돈처럼 사용하면서 기업을 사유화한 범행을 다수의 관련자 조사, 사용처 추적 등 치밀한 수사를 통해 밝혀내고, A회사 사장 100 등을 기소하여 엄단함

□ 경찰 불송치 사건을 검찰에서 전면 보완수사하여 범행 전모 규명

- 경찰은 비자금 조성 과정을 담당한 A회사 전무 200의 57억 원 횡령에 대하여만 불구속 송치하고, 사장 100의 비자금 횡령 및 납품업체 이사 200의 공갈에 대하여는 불송치 결정하였음
- 그러나 검찰은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, 경찰 불송치 결정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재수사요청하였고, 그럼에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경찰에 송치요구 하였음
- 이후 검찰에서 관련자 재조사, 계좌추적,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 등 전면적으로 직접 보완수사한 결과,
 - 납품업체를 통한 가공거래 등 방식으로 57억 원 외에 추가로 34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, A회사 사장 100의 관여 및 공모 사실, 이러한 비자금이 오로지 사주일가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된 사실 등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,
 - 한편으로, 비자금 조성 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겠다며 금원을 갈취한 200, 200을 각 구속 기소하였음

5 향후 계획

- 사주일가가 상장회사의 재산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마음껏 횡령하는 범행은 기업의 건전성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범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, 피고인들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음

[별첨. 범행구조도]

A 제약회사 비자금 조성 방법

